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년월일 : 2023.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재원을 표시하여 기금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답례품 공급 사무 위탁의 근거와 평창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2조)
- 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위원회(안 제6조~제15조)
- 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안 제19조~20조)
- 라. 답례품 공급의 사무위탁(안 제24조)
- 마. 기부자에 대한 예우(안 제26조)
- 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행사 등(안 제2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23. 5. 1. ~ 23.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또는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안 제18조)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목적)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⑥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이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가 법 제9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평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평창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3.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평창사랑상품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물품 등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평창군 품질인증 품목 및 평창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농수산물  
공품 등 제조품
10. 평창군 소재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 ·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생산한 물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  
승공예품
13. 관광입장권 등 평창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4. 평창군의 전통성 · 상징성 · 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1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 ·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19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1조(답레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레품 및 답레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레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레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평창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 ①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답례품 정보 ‘고향사랑e음’ 등록, 주문·결제·배송·관리, 생산자 교육, 답례품 품질 및 배송에 대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4. 군과 사전에 협의한 민간 관광시설 무료이용권 또는 할인권 제공

제27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 행사 등)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 · 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세정과장 김 남 호
연락처	(033) 330 - 2279